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1.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8월 13일, 조정훈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4년 8월 1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교육위원회(2024.9.2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4.9.25.)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제9차 교육위원회(2024.11.5.)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조정훈의원)

현행법상 양성평등의식의 증진, 안전사고 예방, 평화적 통일 지향, 기
후변화환경교육 등 필요한 교육의 진흥을 위해 수립해야 할 시책 마
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스마트기기에 대한 사용 등 디지털 교육에 대한 내용은 부
재함. 최근 교육현장에도 AI 디지털 교과서 등 다양한 디지털 기기가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반면,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대한 교육은 충분하지 못한 실정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만 3~9세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25%이며 만 10~19세는 40.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렇다 보니 청소년의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 교육이 시급하단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이 스마트기기를 적정시간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교육 정책을 수립·실시함으로써 과도한 스마트기기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작용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대훈)

최근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심각하다고 지적되고 있는바, 2024년 기준 조사대상 124만 9,317명 중 과의존 위험군에 속하는 청소년은 22만 1,02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스마트폰 과의존을 겪는 청소년은 ‘VDT 증후군’과 같은 신체적인 이상을 겪는 것은 물론, 수면 부족으로 수업 시간에 졸거나 산만한 행동을 보이며, 스마트폰으로 소통하는 것을 더 편하다고 느끼면서 실제 세상과 격리되는 ‘디지털 격리 증후군’ 등의 인지적 문제를 겪기도 함.

또한 학교 내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제지하는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

거나, 수업과 관련 없는 스마트폰 사용으로 교사의 수업을 방해하는 등 스마트기기 사용과 관련하여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학생이 스마트기기를 적정시간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여,

스마트기기 과다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고,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책임감 있는 기기 사용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문정복)

교육기본법이 유아부터 평생학습자까지 공통사항을 다루는 점과 규정 제목과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시책 내용을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교육 등’으로 수정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내용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쳤음.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4. 11.

제 안 자 : 교육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교육기본법이 유아부터 평생학습자까지 공통사항을 다루는 점과 규정 제목과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시책 내용을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교육 등’으로 수정함(안 제22조의5).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2조의5 중 “학생이 스마트기기를 적정시간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을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교육 등”으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u><신 설></u>	<u>제22조의5(스마트기기</u> <u>사용 교육) 국가와</u> <u>지방자치단체는 과</u> <u>도한 스마트기기</u> <u>사용으로 인하여</u> <u>발생하는 부작용을</u> <u>예방하기 위하여</u> <u>학생이 스마트기기</u> <u>를 적정시간 이상</u> <u>사용하지 못하도록</u> <u>필요한 시책을 수</u> <u>립·실시하여야 한</u> <u>다.</u>	제22조의5(스마트기기 사용 교육) ----- ----- ----- ----- ----- ----- <u>올바른 스마트기기</u> <u>사용에 관한 소양</u> <u>교육 등</u> ----- ----- -----

법률 제 호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5(스마트기기 사용 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도한 스마트기기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2조의5(스마트기기 사용 교육)</u>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도한 스마트기기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 용에 관한 소양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